

전과 선정위원회 규정(2004)

제 1조(목적) 본 규정은 고등학교교육과정(교육부고시 제 1997-15)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(중등장학자료 제 2001-54호(2001. 2. 28)에 의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전과 희망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전과위원회의 구성) 전과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선생님으로 하며 위원회는 교육기획부, 학생자치부, 실업교육부, 해당학과부장, 담임선생님, 학적담당교사로 구성한다.

제 3조(전과 허용원칙) 다음 원칙에 의거 전과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.

- ① 전과는 1학년말 각 학과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② 전과는 1 대 1 방식으로 허용한다.
- ③ 전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전과대상자를 선정한다.

제 4조(전과 선정기준)

- ① 학생들에게 희망학과에 대한 1~3지망을 받는다.
- ② 1지망을 우선하여 선정한다.
- ③ 1지망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는 출결상황을 점수화하여 상위학생 순으로 선정한다. 출결점수를 점수화할 때는 총 400점 만점에서 사고결석 1일에 감점 15, 사고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 각 1회에 감점 5점을 한다.
- ④ 출결상황에서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1학기 전 과목 평어 평점을 기준으로 상위성적 학생 순으로 선정한다.

제 5조(처리 원칙) 선정위원회 정원의 2/3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학과변경을 허용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.

전북하이텍고등학교

전과심의위원회 규정(안)



2021. 7.

교무기획부

전북하이텍고등학교 전과심의위원회 규정(안)



I | 관련 법령

1. 초·중등교육법 제48조(학과 등)(법률 제17664호, 2020. 12. 22, 일부개정)
2. 전북하이텍고등학교 학칙(전북하이텍고등학교-4449, 2021. 4. 13, 일부개정)

II | 세부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전북하이텍고등학교 학교 규칙(학칙)」에 의거 재학생의 학과 변경(이하 전과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1.4.13.)

제2조(전과심의위원회 구성)

1. 전과심의위원회는 교감, 교무기획부장, 인성인권안전부장, 학과부장(전출 및 전입 학과부장), 학적담당교사(6인)으로 구성하며, 교감은 위원장이 되어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교무기획부장은 간사가 되어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.
2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3조(전과 허용원칙) 다음 원칙에 의거 전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다.

1. 전과 신청의 자격은 신청일 기준 2학년 진급 예정자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.
2. 전과의 신청 및 허가 시기는 매 학기 1학기 및 2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으로 한다.
3. 전과는 재학 중 1회 가능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의 요청을 받아 전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는 경우 2회까지 전과할 수 있다.
4. 전과로 인한 학년 및 학기의 이동은 신청 시점과 동일한 학년 및 학기로 한다.
5. 학과의 수용 능력 및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학과로의 전과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4조(전과 선정기준)

1. 전과 희망자는 1~2지망 희망학과를 작성하여 접수한다.
2. 전과심의위원회는 1지망을 우선하여 선정한다.
3. 1지망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결상황을 점수화하여 상위학생 순으로 선정한다.

☑ 산출식: $20 - \{\text{미인정결석 일수} * \text{가중치}(2\text{점})\} = \text{취득점수}$
예) 미인정결석 일수가 5일인 경우 $\rightarrow 20 - (5 * 2) = 10\text{점}$
※ 미인정결석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0점 적용
※ 미인정 지각, 조퇴, 결과를 합하여 3회당 미인정결석 1일로 환산 적용

4. 출결상황에서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는 직전 학기 상위성적 학생 순으로 선정한다.

제5조(처리 원칙)

전과심의위원회 정원의 2/3를 정족수로 하고 참석인원 과반의 동의로 전과를 최종결정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전과 신청)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임교사 및 학과 부장교사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기한 내에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전과 신청서(사유서) 및 학부모 동의서
2. 신청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
3. 기타 관련 서류

제7조(학적 관리)

전과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학과의 학번을 새로 적용하여 학적을 관리한다.

제8조(기타)

전과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.

부 칙(개정 2021.7.00. 전북하이텍고등학교-)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7월 전북하이텍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후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